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 나.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안 제2조)
- 다.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 ~ 안 제8조)
- 라.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등(안 제9조 ~ 안 제15조)
 - 2) 관리위탁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 마.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안 제22조)

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 분리하여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이상에 해당되어 전부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조, 제4조, 제31조, 제27조, 제44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059호

가) 예고기간: 2019. 08. 09. ~ 08. 30.(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공간과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

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유경험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공립 작은도서관

제9조(설치 등) 군수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인력) ①공립 작은도서관에는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10시간 운영. 단,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공휴일
3. 제2호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로 하되,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필요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립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장서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60일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30일전 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사립 작은도서관

제2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관외로 이전하거나 폐관할 경우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성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시간) 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한 자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조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시설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및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산편성내역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정 상 호

□ 도서관법**제2조(정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